

# 다자녀 특별공급 서류 안내문 (예비 입주자 포함)

## 덕소강변 라온프라이빗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!

아래의 일정 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 및 자격확인서류(부적격 소명자료)를 제출하시어 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세대주, 세대원, 주소지, 거주기간, 주택소유,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등)

- 일 정 : 2021년 05월 08일(토)~05월 13일(목), 6일간(10:00~17:00)
- 장 소 : 덕소강변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(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6-3)
- 예약방법 :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deokso7raon.com/>) → 방문예약 메뉴

※ 당사 견본주택은 당첨자 대상으로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상기 예약방법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방문 시 견본주택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,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(추후 주차장 별도 안내 예정)  
 ※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류접수는 당첨자 또는 서류제출자 외 동반 1인 이외에는 출입할수 없습니다.(임산부,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는 기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 
 ※ 본 안내문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우편수신이 늦어짐을 양해 바라며, 개별 문자 및 전화로 안내 진행 예정입니다.  
 ※ 계약서 발급은 추후 지정계약기간 내 발급하오니, 추후 지정계약기간 내 반드시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
### 다자녀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※ 조회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(기록대조 시작일 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공고일 현재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혼인 확인 또는,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사·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위해 제출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,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)제출 (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계약 시 작성 ※ 견본주택 비치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 선정 시,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 ※ 재혼가정의 자녀(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)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청약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가족으로5년이상 경과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 "상세"로 발급